

1. 개정이유

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부과·징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세외수입 분류체계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을 신설하고,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환급금 충당 시 통지 방법 등을 규정하여 현행 제도를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지방세외수입 분류체계 개편 (안 제2조의2)

「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」 개정(‘20.3.24.)으로 법령위반·질서유지 등 제재적 성격을 갖는 부과형 과목들을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으로 정의함에 따라 지방세외수입 분류체계에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 등을 신설

나.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환급금 충당 시 통지 방법 등 규정(안 제2조의7)

지방행정제재·부과금 환급금 충당 시 납부자에게 통지 하기 위한 방법 마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 중 “부담금”을 “자치단체간 부담금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다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보조금반환수입

마. 지난년도수입

3.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 등

가. 과징금

나. 이행강제금

다. 부담금

라. 변상금

마. 과태료

바. 환수금

제2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7(지방행정제재·부과금 환급금의 충당) 영 제5조의13제3항에 따라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 환급금의 충당 사실을 통지할 경우 다음

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
1. 납부자의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명칭), 생년월일(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) 및 주소
2. 환급금의 세목, 기(既)납부액, 정상납부액, 환급금액 등 환급금 내역
3. 충당하는 지방행정제재·부과징수금의 세목, 체납액, 충당액, 충당 후 잔여액 등 충당내역
4. 그 밖에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 환급금 충당과 관련하여 통지가 필요한 사항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의2(지방세외수입의 구분)	제2조의2(지방세외수입의 구분)
① 법 제2조제1호의2에서 “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수 입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을 말한다.	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임시적 세외수입	2. -----
가. (생 략)	가. (현행과 같음)
나. <u>부담금</u>	나. <u>자치단체간 부담금</u>
다. <u>과징금 등</u>	다. <u>보조금반환수입</u>
라. (생 략)	라. (현행과 같음)
마. <u>지난연도수입</u>	마. <u>지난년도수입</u>
<u><신 설></u>	3. <u>지방행정제재 · 부과금 등</u> 가. <u>과징금</u> 나. <u>이행강제금</u> 다. <u>부담금</u> 라. <u>변상금</u> 마. <u>과태료</u> 바. <u>환수금</u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제2조의7(지방행정제재 · 부과금 환급금의 충당) 영 제5조의12제 3항에 따라 지방행정제재 · 부</u>

과금 환급금의 충당 사실을 통지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
1. 납부자의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명칭), 생년월일(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) 및 주소

2. 환급금의 세목, 기(既)납부액, 정상납부액, 환급금액 등 환급금 내역

3. 충당하는 지방행정제재·부과징수금의 세목, 체납액, 충당액, 충당 후 잔여액 등 충당 내역

4. 그 밖에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 환급금 충당과 관련하여 통지가 필요한 사항